

(사업방법서 별지)

**1. 보험종목의 명칭**

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 특약

**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**

**가. 보험기간**

주계약에 준함

**나. 보험료 납입기간**

해당사항 없음

**다. 피보험자 가입나이**

주계약에 준함

**라. 보험료 납입주기**

해당사항 없음

**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4. 배당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5. 보험료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8. 해지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**

가.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(효력회복)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취급한다.

나. 주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것으로 본다.

다.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한다.

**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**10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**

해당사항 없음

## 11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2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3. 지급보험금액의 한도

주계약 사망보험금액(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)의 50% 이내에서 피보험자별로 다른 보험계약을 더하여 1인당 최고 3,000만원까지로 한다.

다만,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한다.

## 14. 기타

### 가. 부가대상상품

(1) 이 특약은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는 부가하지 않는다.

(가) 제3보험

(나)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

(다) 단체보험

(2) 이 특약의 판매이전 체결된 주계약에 대하여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.

### 나. 기타사항은 주계약에 준함